

제 2619호
2025. 8. 28.

발행인 : 도봉구청장
편집인 : 홍보정책과
전화 : (02)2091-2903

선 략

구 보

□ 공고

- 제2025-1266호 방학산동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3
- 제2025-12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공 략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 고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대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 공고 제2025-497호(2025.3.20.)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08. 28.(목) ~ 2025. 09. 29.(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7)

다. 의견제출 : 서면 제출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방문, Fax(☎02-2091-6255), 우편(※ Fax 발송 시 반드시 유선 연락)
- 공고문에 첨부된 공람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제출

라. 공람사유 :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재공람

마. 공람내용 :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바.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견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방학동 272번지 일대	—	증) 140,872.6	140,872.6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40,872.6	100.0	—
획지	소계	123,948.1	88.0	—
	획지1	52,858.0	37.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70,340.1	50.0	
	획지3	750.0	0.5	유치원
정비 기반시설	소계	16,924.5	12.0	—
	도로	911.0	0.6	—
	근린공원	10,499.5	7.4	—
	어린이공원	2,524.0	1.8	—
	공공공지	226.0	0.2	—
	하천	2,764.0	2.0	—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Ⅰ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증·감	변경(안)		
합 계		140,872.6	—	140,872.6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437.4	—	11,437.4	8.1	
	제3종일반주거지역	129,435.2	—	129,435.2	91.9	

Ⅱ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km)	폭원(m)	비고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 구	연산군묘~ 방학사거리	43,613.0	1.7	양측 15	방학로

4.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24	10~30	보조간 선 도로	2,801 (64)	우이동 4-2	방학 사거리	일반도 로	건고시 제2126호 (`66.1.8.)	-
변경	대로	2	24	10~33	보조간 선 도로	2,801 (64)	우이동 4-2	방학 사거리	일반도 로	건고시 제2126호 (`66.1.8.)	노선 일부 확폭
기정	중로	2	97	15~18 (15)	-	8,900 (315)	쌍문동	중계동	-	건고시 제18호 (`72.9.4.)	-
변경	중로	2	97	15~18 (15~18)	-	8,900 (315)	쌍문동	중계동	-	건고시 제18호 (`72.9.4.)	노선 일부 확폭
폐지	소로	3	-	6	-	17	방학동 498-11	방학동 495-4	-	-	-

※ ()는 정비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Ⅰ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 2-24	대로2-24	- 일부구간 도로 확폭 - 폭원: 30m → 33m	방학로변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한 도로 확폭
중로 2-97	중로 2-97	- 도로 확폭 - 폭원: 15m → 15~18m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고려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
소로 3-	-	시설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시설 폐지

②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방학동 270-2번지 일대	-	증) 10,499.5	10,499.5	-	-
신설	②	공원	어린이 공원	방학동 271-4번지 일대	-	증) 2,524.0	2,524.0	-	-

Ⅰ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0,499.5m²	-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원 신설 - 발바닥공원(공공공지)과 연계한 공원 계획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 효율적인 공원 활용도 제고
②	어린이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2,524.0m²	-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원 신설 - 주변 지역자원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상지 남측 공원 조성

③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공지	공공 공지	방학동 270-2번지 일대	7,000.0	감) 6,708.0	292.0	'99.10.1 8	발바닥 공원
신설	②	공공 공지	공공 공지	방학동 271-5번지 일대	-	증) 226.0	226.0	-	-

Ⅰ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 번호	시설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공공 공지	- 오기 정정 - 면적 7,000.0㎡→8,248.0㎡ (증 1,248.0㎡) - 부분 폐지 - 면적 : 8,248.0㎡→292.0㎡ (감 7,956.0㎡)	- 시설면적 오기 정정 - 정비구역 내 발바닥공원(공공공지)를 포함하여 공원변경에 따른 부분 폐지
②	공공 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226.0㎡	중랑천권역(서울특별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방학로15길에 접한 복개구간 범위에 대해 추후 복개 철거·하천복원 가능하도록 공공공지 신설

④ 하천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하천등급	구 간			면적(㎡)	비고
				기점	중점	거리(km)		
기정	-	하천	지방하천	방학동 47-2번지선	방학동 중랑천 합류점	3.04 (0.23)	56,719 (2,764)	방학천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하천복원을 위해 구역 내 포함

※ 발바닥공원 포함 공원확보에 따른 공공기여로 하천 복원은 사업시행자 부담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정기준		계 획면적(㎡)
			기준	면적(㎡)	
주민 공동시설	경로당	주택 용지	2,000세대 이상	1,144.8 이상	1,600
	어린이집		2,000세대 이상	1,144.8 이상	1,600
	작은도서관		2,000세대 이상	507.9 이상	660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	5,000
	어린이놀이터		500㎡+ 세대당 0.7㎡	3,369.3 이상	5,000
	주민공동시설		—	—	4,400
	다함께돌봄시설		500세대 이상	66.0 이상	1,875
	소계		1,000세대 이상 = (500㎡+ 세대수×2.0㎡) ×1.25	10,872.5 이상	20,135
관리사무소		주택 용지	50세대 이상 : 10+(세대수-50)×0.05㎡	212.45 이상	350
경비실			—	—	160
서울형 키즈카페			—	—	825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및 <별표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 등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방학신동아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0,872.6	획지1,2	123,198.1	방학동 272번지 일대	37	—	—	37	—
			획지3	750.0	방학동 272-1번지 일대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규	방학신동아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0,872.6	획지 1,2	123,198.1	방학동 272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63.11 이하	299.97 이하	해발고도 180m 이하 (47층)																							
			획지3	750.0	방학동 272-1 번지 일대	유치원	관계 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주택규모별 건설 비용 – 총 세대수 : 4,099세대(분양 3,819세대, 임대 280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98.9%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기준</th><th>세대수(세대)</th><th>비율(%)</th></tr><tr><td colspan="2">합계</td><td>–</td><td>4,099</td><td>100.0</td></tr><tr><td rowspan="2">전용 85㎡ 이하</td><td>전용 40~60㎡ 이하</td><td rowspan="2">전체 세대수의 60% 이상</td><td>2,668</td><td>65.1</td></tr><tr><td>전용 60~85㎡ 이하</td><td>1,385</td><td>33.8</td></tr><tr><td colspan="2">전용 85㎡ 초과</td><td>–</td><td>46</td><td>1.1</td></tr></table>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기준	세대수(세대)	비율(%)	합계		–	4,099	100.0	전용 85㎡ 이하	전용 40~60㎡ 이하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2,668	65.1	전용 60~85㎡ 이하	1,385	33.8	전용 85㎡ 초과		–	46	1.1
구분		기준	세대수(세대)	비율(%)																													
합계		–	4,099	100.0																													
전용 85㎡ 이하	전용 40~60㎡ 이하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2,668	65.1																													
	전용 60~85㎡ 이하		1,385	33.8																													
전용 85㎡ 초과		–	46	1.1																													
심의완화 사항		• 허용용적률 20% 이내 (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 – 공공보행통로 10%, 열린단지 5%, 돌봄시설 5%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용적률 완화</th></tr><tr><th>정비계획용적률</th><th>변경</th><th>예정법적상한용적률</th></tr><tr><td>완화 사항</td><td>263.11%</td><td>증) 36.86%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td><td>299.97%</td></tr></table>									구분	용적률 완화			정비계획용적률	변경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263.11%	증) 36.86%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299.97%												
구분	용적률 완화																																
	정비계획용적률	변경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263.11%	증) 36.86%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299.9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10m (방학로·시루봉로변 5m, 방학로15길변 3~10m, 그 외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2개소(폭 8m, 10m) – 학교, 공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조성구간 지역권 설정 • 신학초 및 타단지 연결부를 제외한 단지 외각 열린단지 조성 – 시루봉로 변 : 근린생활시설 또는 개방형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로를 활성화를 위한 개방공간 조성 – 방학로 변 : 간선도로변 보행량을 고려하여 단지 경계부 수목식재 등 시각적 열린단지 조성 (1m 미만 단차 발생 시 조경석 설치, 생울타리 조성 등) – 방학로15길 및 공원경계부 : 보행량을 고려하여 단차·장애물이 없이 보행을 통해 단지 내부로 접근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신학초 정문 일대 공공보행통로 기능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사항에 대하여 입주민 모집공고 시 지역권설정 및 열린단지 조성 사항 명기																															

Ⅰ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	대지면적 (㎡) (획지1,2)	정비기반시 설 면적(㎡)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기존 정비기반시설 외 국·공유지 면적(㎡)
	140,872.6	123,198.1	16,924.5	11,520.7	—	621.8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 면적 :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6,924.5\text{㎡} - 11,520.7\text{㎡} = 5,403.8\text{㎡}$					
기준용적 률	210.0%					
허용용적 률	- 허용용적률 완화량 = {(공공보행통로 10% + 열린단지 5% + 돌봄시설 5%)× 보정계수 2.0} = $20\% \times 2.0 = 40\%$ ※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24.09.26.)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사업성 보정계수 =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 / 대상단지 평균 공시지가 = $(7,192,258\text{원}/\text{㎡}) / (2,829,669\text{원}/\text{㎡}) = 2.54 \geq 2.0$ 적용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완화량 = $210\% + 40\% = 250\%$					
상한용적 률	- 상한용적률 완화량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토지 + 1 × α현금·건축물) = $230\% \times (1.3 \times 1 \times 0.04386) = 13.11\%$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값으로 함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완화량 + 상한용적률 완화량 = $210\% + 40\% + 13.11\% = 263.11\% \leq 270\%$ - 가중치 = 기반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10\% / 210\% = 1.0$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 = $5,403.8\text{㎡} / 123,198.1\text{㎡} = 0.04386$ ※ 공공시설 토지 제공면적 : 기반시설 면적 -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16,924.5\text{㎡} - 11,520.7\text{㎡} = 5,403.8\text{㎡}$ ※ 공공시설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사업면적 - 기반시설 면적 - 별도 획지(유치원) = $140,872.6\text{㎡} - 16,924.5\text{㎡} - 750.0\text{㎡} = 123,198.1\text{㎡}$ - α현금·건축물 없음					
법적 상한용적 률	법적상한용적률 : 299.97% 이하 = 정비계획용적률 263.11% + 초과용적률 36.86%					

※ 공공시설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름

8.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음
- '24.9.26.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56호) 재정비 고시를 통해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함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 대상지는 사업성 개선방안 기준에 적용 가능한 사업성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였음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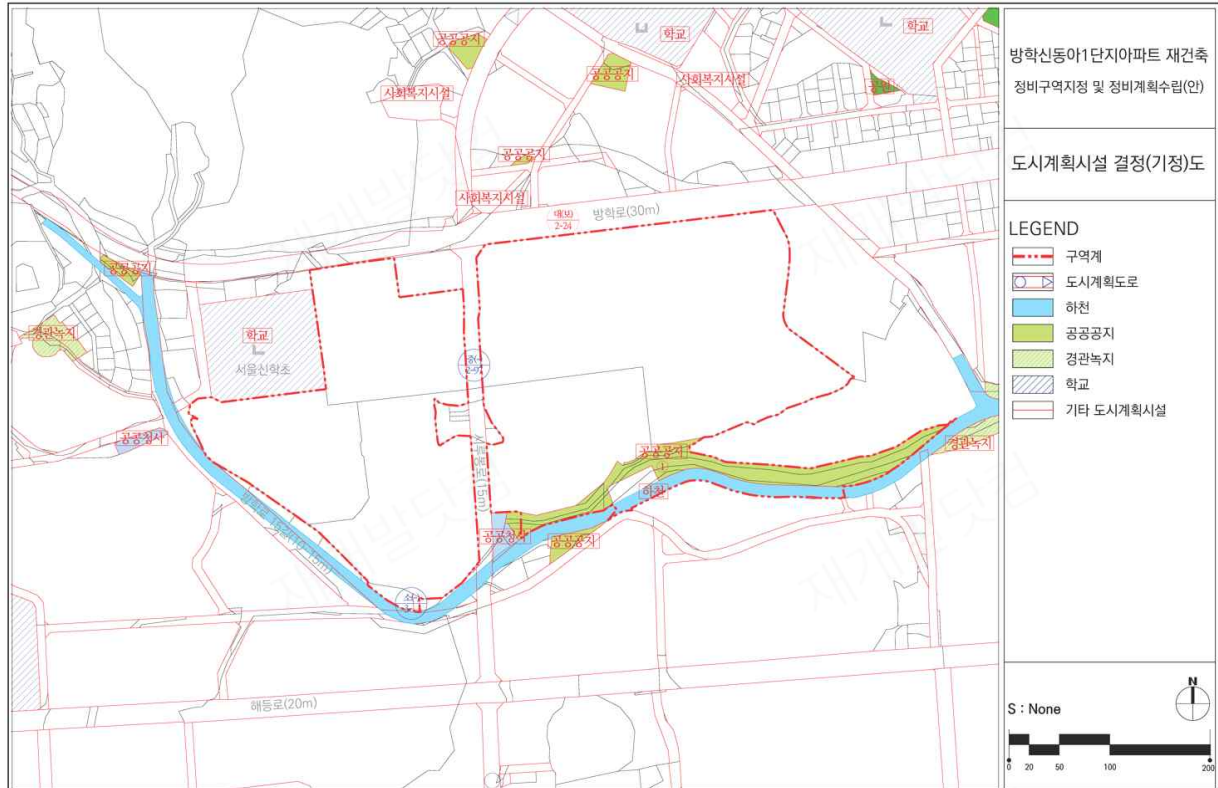
계획 기준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299.97% 이하				
상한용적률		• 263.11%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99.97\% - 263.11\% = 36.86\%$				
	증가된 용적률의 50%	• $36.86\% \times 0.5 = 18.43\%$				
	의무 연면적	• $123,198.1\text{m}^2(\text{대지면적}) \times 18.43\% = 22,705.41\text{m}^2$ ∴ 22,705.41 m^2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m^2)	공급면적(m^2)	세대수(세대)	연면적(m^2)	비고
		43.90	59.67	49	2,923.83	
		49.90	67.98	40	2,719.20	
		59.90	81.71	142	11,602.82	
		84.95	115.80	49	5,674.20	
		합 계		280	22,920.05	

7. 관계도서 : 생략(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재건축팀에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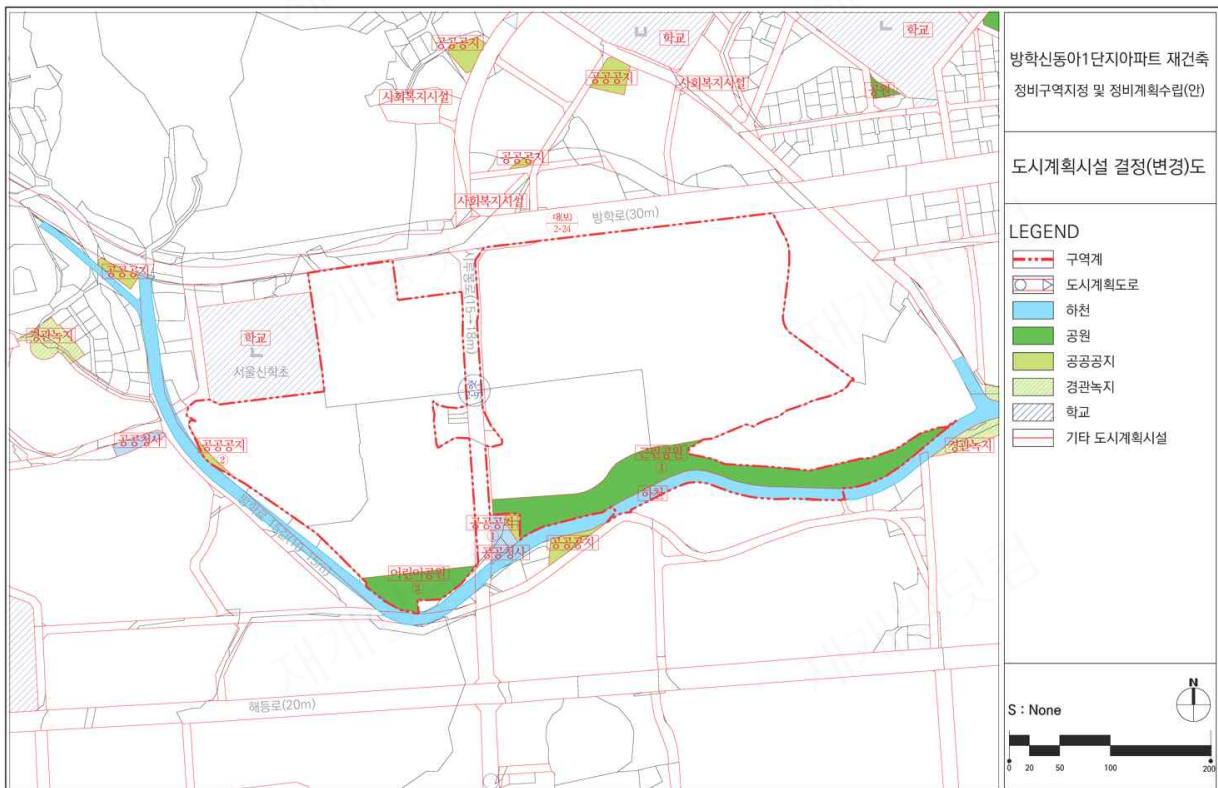
－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 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관련 도면 각 1부. 끝.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토지이용계획도

LEGEND

- 구역계
- 도로
- 공원
- 공공공지
- 하천
- 학교
- 공공청사
- 공동주택
- 유치원
- 건축계획선
- 공공보행통로

S : None

0 20 50 100 200

[illegible]

※ 해당 의견서는 열람공고 장소인 “도봉구청 12층 재건축재개발과 재건축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란 의 건 서

공 고 제 목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 란 기 간		2025. 8. 28. ~ 2025. 9. 29.		
의 건 제출인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년 00월 00일
	전화번호	010-1234-5678		
	소유물건	구역 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 주소		
	주민유형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주민(), 임차인() 해당유형에 체크(✓)		
제 출 의 건				

본인은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 . .

의견 제출인 주 소 _____
성 명 _____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2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 기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나. “우선” 문구 삭제 및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5년 9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6층 지역경제과

【전화: 02-2091-2895, 팩스: 2091-6265, 전자우편: jamiwa79@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해당 조례의 “우선”이라는 문구가 사업자를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및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나. “우선” 문구 삭제 및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완료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아동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1
- 2) 입법 예고: 2025. 8. 28.~2025. 9. 17.(20일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선구매를 통하여”를 “구매를 촉진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지역상품의 구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하여”를 “적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우선구매 촉진”을 “구매촉진”으로, “도봉구”를 “서울특별시 도봉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우선구매 촉진”을 “지역상품 구매촉진”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구매 촉진”을 “구매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매”를 “구매촉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u> <u>우선구매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u>우선구매</u>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매촉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지역상품</u> <u>우선구매</u>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u>지역상품</u> <u>우선구매</u>)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u>우선구매</u>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u>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u> <u>구매촉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 ----- <u>구매를 촉진하여</u> ----- ----- --. 제5조(구매촉진) ① ----- ----- ----- <u>지역상품의 구매</u>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u>지역상품</u> <u>구매</u>) ① ----- ----- ----- <u>구매</u> ----- --. ② -----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봉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약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3. (생략)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적극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 구매촉진 -----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지역상품 구매촉진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

-----.

1. ----- 구매촉진 -----

2. 3. (현행과 같음)

4. ----- 구매촉진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지역경제과 권용성
연 락 처	02-2091-2895

검 토 의 건 서

※ 담당자 : ○○○과(동) ○○○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검토사유